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61104 부당이득금
원 고	1. [redacted] 주식회사
	2. [redacted]개발 주식회사
	3.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도
	2. [redacted]국
변 론 종 결	2016. 3. 8.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redacted]도는,

가. 원고 [redacted] 주식회사에게 1,462,185,580원 및 그 중 ① 58,584,360원은 2007.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26.부터, ② 234,337,380원은 2007. 11. 28.부터, ③ 371,708,080원은 2009. 9. 28.부터, ④ 797,555,76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redacted]개발 주식회사에게 70,406,230원 및 그 중 ① 122,400원은 2006. 10. 25. 부터, ② 2,800,530원은 2008. 6. 13.부터, ③ 2,641,690원은 2008. 11. 24.부터, ④ 3,301,600원은 2009. 9. 28.부터, ⑤ 2,635,340원은 2010. 3. 22.부터, ⑥ 2,427,820원은 2010. 9. 17.부터, ⑦ 5,797,730원은 2011. 3. 28.부터, ⑧ 17,397,320원은 2011. 9 29. 부터, ⑨ 7,549,690원은 2012. 6. 20.부터, ⑩ 25,732,11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에게 2,995,304,230원 및 그 중 ① 137,040,890원은 2008. 6. 13.부터, ② 129,268,13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1,593,220원은 2009. 9. 28.부터, ④ 128,957,220원은 2010. 3. 22.부터, ⑤ 118,795,780원은 2010. 9. 17.부터, ⑥ 283,705,860원은 2011. 3. 28.부터, ⑦ 851,117,590원은 2011. 9. 29.부터, ⑧ 362,050,850원은 2012. 6. 20.부터, ⑨ 822,774,6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redacted]국은,

가. 원고[redacted] 주식회사에게 33,896,120원 및 그 중 ① 2,987,800원은 2007. 1. 26.부터, ② 11,951,210원은 2007. 11. 28.부터, ③ 18,957,110원은 2009. 9. 28.부터, 각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redacted]개발 주식회사에게 1,631,790원 및 그 중 ① 142,820원은 2008. 6. 13.부터, ② 134,720원은 2008. 11. 24.부터, ③ 168,380원은 2009. 9. 28.부터, ④ 134,410원은 2010. 3. 22.부터, ⑤ 123,810원은 2010. 9. 17.부터, ⑥ 134,410원은 2011. 3. 28.부터, ⑦ 403,300원은 2011. 9 29.부터, ⑧ 176,040원은 2012. 6. 20.부터, ⑨ 213,90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에게 71,476,570원 및 그 중 ① 6,989,080원은 2008. 6. 13.부터, ② 6,592,670원은 2008. 11. 24.부터, ③ 8,241,250원은 2009. 9. 28.부터, ④ 6,576,820원은 2010. 3. 22.부터, ⑤ 6,058,580원은 2010. 9. 17.부터, ⑥ 6,576,820원은 2011. 3. 28.부터, ⑦ 19,730,450원은 2011. 9. 29.부터, ⑧ 8,276,310원은 2012. 6. 20.부터, ⑨ 2,434,590원은 2012.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 공동으로 [redacted]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정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 23. [redacted]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0. 소외 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하였다.

다. 소외 공사에게 원고 [redacted] 주식회사는 2006. 12. 28.부터 2009. 8.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합계 30,701,027,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2006. 12. 28.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합계 67,889,689,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후에는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8. 31. 소외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0. 30.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redacted] 주식회사는 별표 1기재와 같이 2007. 1. 26.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redacted]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합계 1,462,185,580원을, 피고 [redacted]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33,896,120원을, 원고 [redacted]개발 주식회사는 별표 2기재와 같이 2006. 10. 25.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redacted]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70,406,2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1,631,790원을, 원고 주식회사 [redacted]는 별표 3기재와 같이 2008. 6. 13.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redacted]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2,995,304,230원을, 피고 [redacted]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71,476,570원을 각 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납부하였다.

바. [redacted]시장은 2014. 9. 23. 소외 신탁회사가 2011. 8.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 합계 6,647,027,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소외 신탁회사는 2014. 10. 31. 위 세금을 납부하고 감사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조세채무자라고 보고, 피고 [redacted]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를 위 1의 마.항과 같이 신고, 납부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조세채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위 조세납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정과 갑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권

판사 권세진

판사 백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별표 1

납부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합계	국세 합계 (농특세)	합계
2007. 1.26.	58,584,360			58,584,360	2,967,800	61,572,160
2007.11.28.	234,337,380			234,337,380	11,951,210	246,288,590
2009. 9.28.	371,708,080			371,708,080	18,957,110	390,665,190
2012.10.30.		664,629,800	132,925,960	797,555,760	0	797,555,760
합계	664,629,820	664,629,800	132,925,960	1,462,185,580	33,896,120	1,496,081,7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별표 2

납부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합계	국세 합계 (농특세)	합계
2006.10.25.		102,000	20,400	122,400	0	122,400
2008. 6.13.	2,800,530			2,800,530	142,820	2,954,350
2008.11.24.	2,641,690			2,641,690	134,720	2,776,410
2009. 9.28.	3,301,600			3,301,600	168,380	3,469,980
2010. 3.22.	2,635,340			2,635,340	134,410	2,769,750
2010. 9.17.	2,427,820			2,427,820	123,810	2,551,630
2011. 3.28.	5,270,670		527,060	5,797,730	134,410	5,932,140
2011. 9.29.	15,815,750		1,581,570	17,397,320	403,300	17,800,620
2012. 6.20. (가산세)	6,904,180 (1,294,650)		645,510 (84,570)	7,549,690	176,040 (33,000)	7,725,730
2012.10.30.	22,196,220		3,535,890	25,732,110	213,900	25,946,010
합계	63,993,800	102,000	6,310,430	70,406,230	1,631,790	72,038,0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별표 3

납부일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합계	국세 합계 (농특세)	합계
2008. 6.13.	137,040,890			137,040,890	6,989,080	144,029,970
2008.11.24.	129,268,130			129,268,130	6,592,670	135,860,800
2009. 9.28.	161,593,220			161,593,220	8,241,250	169,834,470
2010. 3.22.	128,957,220			128,957,220	6,576,820	135,534,040
2010. 9.17.	118,795,780			118,795,780	6,058,580	124,854,360
2011. 3.28.	257,914,430		25,791,430	283,705,860	6,576,820	290,282,680
2011. 9.29.	773,743,270		77,374,320	851,117,590	19,730,450	870,858,040
2012. 6.20. (가산세)	331,093,330 (62,119,490)		30,957,520 (4,060,140)	362,050,850	8,276,310 (1,551,970)	370,327,160
2012.10.30. (가산세)	687,643,640 (11,988,390)		135,131,050	822,774,690	2,434,590 (2,434,590)	825,209,280
합계	2,726,049,910		269,254,320	2,995,304,230	71,476,570	3,066,780,800